

化粧品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目的)

第1条 この公正競争規約(以下「規約」という。)は、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昭和37年法律第134号)第31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化粧品の表示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不当な顧客の誘引を防止し、一般消費者による自主的かつ合理的な選択及び事業者間の公正な競争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表示の基本)

第2条 前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事業者は、化粧品の表示に関し、次に掲げる事項を銘記し、規約の厳正な実施を期するものとする。

(1) 化粧品は、日常的に身体に直接使用されるとともに、美と心の充足を求めるという商品特性を有することから、一般消費者の使用目的や求めに応じた商品選択と知識が得られるよう積極的かつ的確な情報提供を趣旨とし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2) 化粧品の品質、効能効果、安全性等について、虚偽又は誇大な表示をすることにより、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定義)

第3条

この規約で「化粧品」とは、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昭和35年法律第145号。以下「医薬品医療機器等法」という。)第2条第3項に定める「人の身体を清潔にし、美化し、魅力を

화장품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조 (목적)

이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자주적이며 합리적인 선택 및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시의 기본)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화장품 표시에 관해 다음 사항을 명기하고 규약을 엄정히 실시한다.

(1) 화장품은 일상적으로 신체에 직접 사용되며 아름다움과 심리적 충족을 추구하는 상품 특성을 지니므로, 일반 소비자가 사용 목적과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취지로 하여야 한다.

(2) 화장품의 품질, 효능 및 효과, 안전성 등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 표시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의)

① 이 규약에서 "화장품"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 이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

増し、容貌を変え、又は皮膚若しくは毛髪を健やかに保つために、身体に塗擦、散布その他これらに類似する方法で使用されることが目的とされている物で、人体に対する作用が緩和なもの」であって、化粧石けん及び歯みがき類を除いたものをいう。

2 この規約で「事業者」とは、化粧品を製造する事業者並びに製造等(他に委託して製造をする場合を含み、他から委託を受けて製造をする場合を含まない。)をし、又は輸入をした化粧品を販売する事業者(以下「製造販売業者」という。)及びこれらに準ずる事業者であって、この規約に参加する者をいう。

3 この規約で「表示」とは、顧客を誘引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事業者が自己の供給する化粧品の取引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行う広告その他の表示であって、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1) 商品、容器又は包装による広告その他の表示及びこれらに添付した物による広告その他の表示

(2) 見本、チラシ、パンフレット、説明書面その他これらに類似する物による広告その他の表示(ダイレクトメール、ファクシミリ等によるものを含む。)及び口頭による広告その他の表示(電話によるものを含む。)

(3) ポスター、看板(プラカード及び建物又は電車、自動車等に記載されたものを含む。)、ネオン・サイン、アドバルーンその他これらに類似する物による広告及び陳列物又は実演による広告

람의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미화하고, 매력을 증진하고, 용모를 바꾸거나 피부 혹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목적의 물건으로 인체에 강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미용비누 및 치약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약에서 "사업자"란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및 제조 등(다른 곳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다른 곳에서 위탁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을 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로 이 규약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약에서 "표시"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화장품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광고 및 그 밖의 표시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상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한 광고, 기타 표시 및 여기에 첨부한 물건에 의한 광고 및 그 밖의 표시

(2) 견본품, 전단지, 팸플릿, 설명서면, 기타 이들과 유사한 물건에 의한 광고 및 그 밖의 표시(다이렉트 메일, 팩시밀리 등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및 구두에 의한 광고, 그 밖의 표시(전화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3) 포스터, 간판(플래카드 및 건물 또는 전철, 자동차 등에 기재된 것을 포함한다), 네온사인, 애드벌룬, 기타 이들과 유사한 물건에 의한 광고 및 진열물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4) 新聞紙、雜誌その他の出版物、放送(有線電気通信設備又は拡声機による放送を含む。)、映写、演劇又は電光による広告

(5) 情報処理の用に供する機器による広告その他の表示(インターネット、パソコン通信等による広告を含む。)

(必要表示事項)

第4条 事業者は、化粧品の直接の容器又は直接の被包(直接の容器又は直接の被包に表示された事項が、外部の容器又は外部の被包を透かして容易に見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当該外部の容器又は外部の被包を含む。)に次に掲げる事項を化粧品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施行規則(以下「施行規則」という。)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邦文で外部から見やすい場所に、明瞭に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施行規則で特に定める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1) 種類別名称
- (2) 販売名
- (3) 製造販売業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4) 内容量
- (5) 製造番号又は製造記号
- (6) 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化粧品については、その使用の期限
- (7) 厚生労働大臣の指定する成分
- (8) 原産国名(原産地が一般に国名より地名で知られ、地名による表示が適切である場合は、原産地名。)ただし、一般消費者によって明らかに国産品であると認識されるものを除く。
- (9) 施行規則で定める化粧品については、その使用上又は保管上の注意

(4) 신문지, 잡지, 기타 출판물, 방송(유선전기통신설비 또는 확성기에 의한 방송을 포함한다), 영사, 연극 또는 전광에 의한 광고

(5) 정보처리 용도로 이용되는 기기에 의한 광고 및 그 밖의 표시(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광고를 포함한다)

제4조 (필요 표시사항)

사업자는化粧品の 직접 용기 또는 1차 포장(직접 용기 또는 1차 포장에 표시된 사항을 외부 용기 또는 2차 포장을 투과하여 쉽게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외부 용기 또는 2차 포장을 포함한다)에 다음의 사항을化粧品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문으로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종류별 명칭
- (2) 판매명
- (3)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4) 내용량
- (5)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 (6)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化粧品의 경우 그 사용기한
- (7)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하는 성분
- (8) 원산국명(원산지가 일반적으로 국가명보다 지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명에 의한 표기가 적절한 경우에는 원산지명) 다만, 일반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국산품으로 인식되는 것은 제외한다.
- (9) 시행규칙에서 정하는化粧品의 경우 그 사용상 또는 보관상의 주의사항

(10) 問合せ先

(効能効果表示)

第5条 事業者は、化粧品の効能効果を表示する場合は、医薬品医療機器等法で許容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配合成分の特記表示)

第6条

事業者は、化粧品の配合成分が当該成分の用量の範囲において、効能効果を生じることが客観的に実証されている場合には、その配合成分を特記して表示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配合成分を文字、絵、写真、図案等により特記して表示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基準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1) 当該配合成分の一般的名称、商品名又は略称で表示すること。ただし、商品名又は略称で表示する場合は、一般的名称を併記すること。

(2) 当該配合成分の配合目的を表示すること。

3 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施行規則で定める配合成分については、特記して表示することができない。

(配合成分の名称を販売名に用いる場合)

第7条 事業者は、配合成分の名称を販売名に用いても、当該化粧品の効能効果について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がないものとして施行規則で定めるものについては、配合成分の名称を販売名に表示することができる。

(特定用語の使用基準)

(10) 문의처

제5조 (효능 및 효과 표시)

사업자는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를 표시하는 경우,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배합 성분의 특기 표시)

① 사업자는 화장품의 배합 성분이 해당 성분의 용량 범위에서 효능 및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경우, 그 배합 성분을 특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배합 성분을 문자, 그림, 사진, 도안 등으로 특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해당 배합 성분의 일반적 명칭, 상품명 또는 약칭으로 표시할 것. 다만, 상품명 또는 약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명칭을 함께 기재할 것

(2) 해당 배합 성분의 배합 목적을 표시할 것

③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배합 성분에 대해서는 특기하여 표시할 수 없다.

제7조 (배합 성분의 명칭을 판매명에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배합 성분의 명칭을 판매명으로 이용하여도 해당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를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배합 성분의 명칭을 판매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第8条 事業者は、化粧品に表示において、安全、万能、最上級等を意味する用語を使用する場合は、施行規則で定める基準によらなければならない。

(比較表示の基準)

第9条 事業者は、化粧品の品質、効能効果、安全性等に関し、他の商品と比較表示する場合は、客観的事実に基づく具体的数値又は根拠を付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不当表示の禁止)

第10条 事業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 (1) 化粧品の製造方法について、実際の製造方法と異なる表示又はその優秀性に関し事実と反する表示により、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表示
- (2) 化粧品の配合成分又はその配合量について、虚偽の表現、不正確な表現等を行うことにより、当該化粧品の効能効果又は安全性について、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表示
- (3) 化粧品の効能効果又は安全性について、具体的な効能効果又は安全性を摘示することにより、それが確実である保証をしたかのように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表示
- (4) 化粧品の品質、効能効果、安全性について、最大級又は完全等を意味する表現により、実際のものより著しく優良であるかのように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表示

제8조 (특정 용어의 사용 기준)

사업자는 화장품 표시에 안전, 만능, 최상급 등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9조 (비교 표시의 기준)

사업자는 화장품의 품질, 효능 및 효과, 안전성 등에 관하여 다른 상품과 비교 표시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에 따른 구체적 수치 또는 근거를 덧붙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당 표시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화장품의 제조 방법과 관련하여 실제 제조 방법과 다른 표시 또는 그 우수성에 관해 사실에 반하는 표시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 (2) 화장품의 배합 성분 또는 그 배합량에 대하여 허위 표현, 부정확한 표현 등을 함으로써 해당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 또는 안전성을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 (3)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 또는 안전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효능 및 효과 또는 안전성을 적시함으로써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 (4) 화장품의 품질, 효능 및 효과, 안전성 등에 대해 최대급 또는 완전 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5) 医薬関係者、理容師、美容師、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者が特定化粧品を指定し、公認し、推薦し、選用する場合であつて、実際のものより著しく優良であるかのように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表示

(6) 化粧品の選び方又はその試験方法について、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表示

(7) 化粧品の原産国について、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表示

(8) 化粧品の品質、効能効果、安全性等について、他社の商品を誹謗するような表示

(9) その他化粧品の内容又は取引条件について、実際のもの又は自己と競争関係にある他の事業者に係る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又は有利であると一般消費者に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表示

(10) 事業者が自己の供給する化粧品の取引について行う表示であつて、一般消費者が当該表示であることを判別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もの

(過大包装の禁止)

第11条 事業者は、内容物の保護、品質保全、成形技術又はデザインに必要な限度を超えて、過大な容器包装を用いてはならない。

(化粧品公正取引協議会の設置)

第12条

この規約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化粧品公正取引協議会(以下「公正取引協議会」という。)を設置する。

2 公正取引協議会は、事業者及びこれらの者が構成する事業者団体をもって構成する。

(公正取引協議会の事業)

(5) 의약관계자, 이용사, 미용사,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자가 특정 화장품을 지정하고, 공인하고, 추천하고, 선택 이용하는 경우에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6) 화장품의 선택법 또는 그 시험 방법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7) 화장품의 원산국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8) 화장품의 품질, 효능 및 효과, 안전성 등에 대하여 타사의 상품을 비방하는 듯한 표시

(9) 그 밖에 화장품의 내용 또는 거래 조건에 대하여 실제 사실 또는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관련된 것보다 현저하게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10)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화장품의 거래에 대하여 실시하는 표시이며,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것

제11조 (과대포장 금지)

사업자는 내용물의 보호, 품질보전, 성형 기술 또는 디자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대한 용기 포장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화장품 공정거래협회의 설치)

①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장품 공정거래협회(이하 "공정거래협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정거래협회는 사업자 및 이들이 구성하는 사업자 단체로 구성한다.

第13条 公正取引協議会は次の事業を行う。

- (1) この規約の内容の周知徹底に関する事
- (2) この規約についての相談及び指導に関する事
- (3) この規約の規定に違反する疑いがある事実の調査に関する事
- (4) この規約の規定に違反する者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事
- (5)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及び公正取引に関する法令の普及並びに違反の防止に関する事
- (6) 関係官公庁との連絡調整に関する事
- (7) 一般消費者の苦情処理に関する事
- (8) その他この規約の施行に関する事

(違反に対する調査)

第14条

公正取引協議会は、第4条から第11条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事実があると思われるときは、関係者を招致し、事実を聴取し、関係者に必要な事項を照会し、参考人から意見を求め、その他その事実について必要な調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基づく公正取引協議会の調査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公正取引協議会は、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調査に協力しない事業者に対し、当該調査に協力すべき旨を文書をもって警告し、これに従わないときは、3万円以下の違約金を課し、又は除名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違反に対する措置)

제13조 (공정거래협약회의의 사업)

공정거래협약회의는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이 규약 내용의 철저한 주지에 관한 것
- (2) 이 규약에 대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것
- (3) 이 규약의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의 조사에 관한 것
- (4) 이 규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것
- (5)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의 보급 및 위반 방지에 관한 것
- (6) 관계 관공청과의 연락 조정에 관한 것
- (7) 일반 소비자의 민원 처리에 관한 것
- (8) 그 밖에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한 것

제14조 (위반에 대한 조사)

① 공정거래협약회의는 제 4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불러 사실을 청취하고, 관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고, 참고인의 의견을 구하고, 그 밖에 그 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협약회의의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협약회의는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문서로 경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3 만 엔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제명 처분할 수 있다.

第15条

公正取引協議会は、第4条から第11条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違反行為を行った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行為を排除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採るべき旨、当該違反と同種又は類似の違反行為を再び行ってはならない旨、その他これらに関連する事項を実施すべき旨を、文書をもって警告することができる。

2 公正取引協議会は、前項の規定による警告を受けた事業者が当該警告に従っ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当該事業者に対し30万円以下の違約金を課し、除名処分をし、又は消費者庁長官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

3 公正取引協議会は、前条第3項又は本条第1項若しくは第2項の規定により警告をし、違約金を課し、又は除名処分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遅滞なく文書をもって消費者庁長官に報告するものとする。

(違反に対する決定)

第16条

公正取引協議会は、第14条第3項又は前条第2項の規定による措置(警告を除く。)を採ろうとする場合には、採るべき措置の案(以下「決定案」という。)を作成し、これを当該事業者に送付す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事業者は、決定案の送付を受けた日から10日以内に、公正取引協議会に対して文書によって異議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15조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정거래협의회는 제 4 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해당 위반과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경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협의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경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30 만 엔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제명 처분하거나 소비자청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협의회는 제 14 조제 3 항 또는 이 조제 1 항 혹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제명 처분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소비자청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6조 (위반에 대한 결정)

① 공정거래협의회는 제 14 조제 3 항 또는 제 1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경고를 제외한다)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의 안(이하 "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 1 항의 사업자는 결정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공정거래협의회에 대하여 문서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3 公正取引協議会は、前項の異議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は、当該事業者追加の主張及び立証の機会を与え、これらの資料に基づいて、学識経験者の意見を聴き、更に審理を行い、それに基づいて措置の決定を行うものとする。

4 公正取引協議会は、第2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異議の申立てがなかった場合には、速やかに決定案の内容と同趣旨の決定を行うものとする。

(規則の制定)

第17条

公正取引協議会は、この規約の実施に関する規則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則を定め、又はこれ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事前に消費者庁長官及び公正取引委員会の承認を受けるものとする。

【附則】

1 この規約は、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の告示があった日から起算して6ヶ月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13条及び第14条の規定は、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の告示があった日から施行する。

2 前項の規定に拘わらず、この規約施行の日前に製造した化粧品については、施行規則で定める期間に限り、第3条、第4条、第5条及び第7条の規定を適用しない。

【附則】(昭和58年 公正取引委員会告示第27号)

1 この規約は、昭和58年11月18日から施行する。

2 附則第2項を削る。

【附則】(昭和62年 公正取引委員会告示第18号)

③ 公正거래협의회는 제 2 항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 주장 및 입증의 기회를 주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학식 경험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시 심의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결정한다.

④ 公正거래협의회는 제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신속히 결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실행한다.

제17조 (규칙의 제정)

① 公正거래협의회는 이 규약의 실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칙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비자청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① 이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3 조 및 제 14 조의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 시행일 전에 제조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및 제 7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198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7호)

① 이 규약은 198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 2 항을 삭제한다.

[부칙](1987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8호)

1 この規約の変更は、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の告示のあった日(昭和62年9月16日)から施行する。

2 この規約の施行前において事業者がした行為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則】(平成8年 公正取引委員会告示第29号)

1 この規約の変更は、公正取引委員会の認定の告示があった日(平成8年11月12日)から施行する。

2 この規約の施行前において事業者がした行為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則】(平成13年 公正取引委員会告示第7号)

この規約の変更は、平成13年4月1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変更前の規約の規定により表示を行った商品については、平成14年9月30日までの間、これを用いることができる。

【附則】(平成17年 公正取引委員会告示第7号)

1. この規約の変更は、平成17年4月1日から施行する。

2 この規約の変更の施行前において事業者がした行為については、平成19年3月31日まで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ができる。

【附則】(平成21年 公正取引委員会告示第17号)

この規約の変更は、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平成21年法律第48号)の施行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27年 公正取引委員会・消費者庁告示第5号)

① 이 규약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고시가 있었던 날(198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약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1996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9호)

① 이 규약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고시가 있었던 날(199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약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7호)

이 규약의 변경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변경 전 규약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 상품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30일까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부칙](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7호)

① 이 규약의 변경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약의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17호)

이 규약의 변경은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설치법」(2009년 법률 제 4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청 고시 제 5호)

この規約の変更は、規約の変更について公正取引委員会及び消費者庁長官の認定の告示があっ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28年 公正取引委員会・消費者庁告示第1号)

この規約の変更は、平成28年4月1日から施行する。

【附則】(令和6年 公正取引委員会・消費者庁告示第●号)

この規約の変更は、この規約の変更について公正取引委員会及び消費者庁長官の認定の告示があった日(令和6年4月17日)から施行する。

이 규약의 변경은 규약 변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청 장관이 인정한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청 고시 제1호)

이 규약의 변경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청 고시 제●호)

이 규약의 변경은 규약 변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청 장관이 인정한 고시가 있었던 날(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